

화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96. 2. .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등에게 사회복지 차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코자 함

2. 개정근거

전라남도 세정 13400 - 101 ('95. 11. 6) 및 동 13400 - 1095 ('95. 12. 6) 동 13400 - 651 ('95. 7. 15)호

3.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확대
 - °보철용 자동차 1급 ~ 5급에서 1급 ~ 6급까지 감면 확대
-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 대상자 확대
 - °현행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감면토록 하던 것을 언어장애인과 청각 장애인까지 감면대상자에 포함
 - °현행 본인명의로만 등록된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해서만 감면 대상자에 해당 되었으나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감면 대상자에 포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함
-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
 -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면제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확대
 - °현행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던 것을 영구 임대주택 단지안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면제

○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조문 추가 및 감면대상 확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던 것을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 으로 개정하여 과세시점에 대한 해석논란의 소지를 방지함.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도 감면대상에 포함 함.

°현행 중소기업 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만 감면토록 하였으나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가 함.

°현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 함.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 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4조 본문중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 제1항중 "5년간" 을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 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지정을 받은 자 및" 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하며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소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로 한다. 동조 동항 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로 하고 또한 동조 동항 제4호중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p>는 그러지 아니한다.</p> <p>< 신설 ></p>	<p>-----</p> <p><u>제5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u></p> <p><u>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6조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p> <p>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6조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6. (생략)</p> <p>< 신설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u></p>
<p>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p> <p>①(생략)</p>	<p>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p> <p>①(현행과 같음)</p>

신.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②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 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 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제12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p> <p>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 (생 략)</p> <p>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u>지정을 받은자</u>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u>참여자</u></p>	<p>제12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p> <p>① - - - - -</p> <p>- - <u>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u> - - - - -</p> <p>- - - - -</p> <p>-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p> <p>- - - - -</p> <p>- <u>지정을 받은자와</u> - - - - -</p> <p>- - - - -</p> <p>- - - - -</p> <p>- - - - - <u>참여자 및</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3. <u>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u>에 의하여 <u>협동화사업실천계획</u>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p> <p>4. <u>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u>에 의하여 <u>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u>를 하거나 <u>허가를 받은 자</u> 및 <u>아파트형 공장</u>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p> <p>②(생략)</p>	<p><u>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u>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u>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u> 승인을 얻은 자</p> <p>3. <u>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u> - - - - -</p> <p>4. - - - - -</p> <p>- <u>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u>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p> <p>②(현행과 같음)</p>

< 별 표 1 >

현		행	개 정 안
급	수	상이등급분류표	
3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급		108, 109, 111, 112, 113	
5급		25, 26, 28, 29, 41, 73, 77, 92	
6급 (복합 호수 자)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70, 74, 75, 7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 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